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2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하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
나. 지하수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2조)

다.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, 변경,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
라.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지하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지하수의 보전·관리를 위해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고,
-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2조는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3조는 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40조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예고('18. 11. 15.~'18. 11. 20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「지하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